

제2849-1호
2021. 7. 1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56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56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전부 면제와 중구민 대상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추진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
하여 주민 편의 증진 도모

2. 주요내용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5항 신설

- 기존 2종에 한정된 수수료 면제 항목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문서 전체로 확대
- 단서조항 삽입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사무 제외)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항 신설

-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대상 명시
- 무료배송 근거조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민원여권과장, 전화: 02-3396-4762, FAX: 02-3396-8650, E-mail: em290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를 “민원문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중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민원서류 배달서비스의 배송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0. (생략) ② 삭제(1997.1.18.) ③ 서울특별시 중구 성산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 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⑥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중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민원서류 배달서비스의 배송수수료는 무료로 한다.